

도시관리계획(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39호(2006.04.2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도 봉 구 청 장

- 1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- 2. 열람장소 :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(☎ 2091-3562)
- 3.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 -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
 - 획지조서
 - 지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14	3	1,002.9	도봉동 600-27	1,002.9	획지계획
18		419.5	도봉동 600-46	419.5	획지계획

-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14	3	1422.4	도봉동 600-27	1,002.9	획지계획
			도봉동 600-46	419.5	

- 변경사유서

변경내용	변경사유
획지계획 변경 (도봉동 600-27, 600-46 ⇒ 도봉동 600-27 외 1)	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획지 상호간 합병

□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○ 대지내 공지 및 통로

- 기정

제어요소	확보면적	적용구역	비고
전면공지	·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한 공지	· 지구단위계획구역내	
공개공지	· 폭원 5m이상, 45㎡ 이상	· 대형대지(1,000㎡이상)	
공공보행통로	· 폭원 2.0m~4.5m	· 보행통로가 필요한 대지	
쌈지형공지	· 폭원 4m이상, 25㎡ 이상		

- 변경

제어요소	확보면적	적용구역	비고
전면공지	·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한 공지	· 지구단위계획구역내	
공개공지	· 폭원 5m이상, 45㎡ 이상	· 대형대지(1,000㎡이상)	
공공보행통로	· 폭원 2.0m~4.5m	· 보행통로가 필요한 대지	일부구간 선형 조정
쌈지형공지	· 폭원 4m이상, 25㎡ 이상		

- 변경사유서

구분		계획내용	적용구역	변경사유
변경	공공보행통로	공공보행통로 일부 구간 선형 조정 (폭 2m → 3m)	도봉동 600-46 일대	주변 상황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

※ 그 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없음

4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

※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

5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(☎ 2091-35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